

청주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7001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2. 24.

판 결 선 고 2023. 3. 31.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대해,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 2.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2020. 2. 5. 접수 제171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 C에 대해 가지는 대출금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2012. 9.경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나. 이후 원고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7368호로 “C은 E과 연대하여 30,659,292원 및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가 2019. 12.경 사망(이하 편의상 ‘망인’이라 한다)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0. 2. 3.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20. 2. 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과 피고는 남매이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C의 상속지분은 1/3이며, 이 사건 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협의 이전에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있었고, 이후 위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전부 피고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을 때까지 C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며 사해행위 여부에 대해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대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룡

별지